

문서번호	민원여권과-17762
결재일자	2016.5.12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
주무관	민원처리담당	민원여권과장	행정국장
이학연	이명식	김송열	05/12 손정수
협 조 자			

**- 201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-
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**

2016. 05.

**행정국
민원여권과**

- 201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-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

I 심의회 개요

- 일 시 : 2016. 05. 12 (금) 10:00시
- 장 소 : 행정국장실
- 참석위원 : 5 명
 - 위원장 : 행정국장
 - 위 원 : 김귀옥 위원, 이재욱 위원, 행정지원과장

II 심의 사항

- 청 구 인 : 김○○(서울시 성북구 장월로)
- 주관부서 : 건축과
- 심의안건 : 건축과의 ‘부분공개’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
 - 청구내역 : 장위동 219-453호 지상 “건축공사장 건축설계서(도면) 일체, 건축허가서” 청구
 - 비공개 사유 : 건축공사장의 건축설계서(도면) 및 건축허가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의견 청취한 바, 비공개 의견이 제출되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리함.
 - 이의신청 내역 : 인접대지 건축공사장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내용을 확인하고자 건축설계도 및 건축허가서, 건축공사 중지명령서를 공개 청구 하였으나 공개 처리한 건축공사 중지 명령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함

III 심의 결과

■ 의결 내용

- 건축허가서 청구 건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3조 및

『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』 제11조제4항 및 동 조례 제12조제2호에 따라 “추가 공개” 하고,

- 건축공사장 건축설계서(도면) 일체 청구 건은 『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』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“비공개” 한다.

- 붙임 : 1. 심의자료 1부
2. 심의의결서 1부.
3. 회의록 1부. 끝.